

제 16 장 도서정보위원회

신설 2010년 6월 7일

제42조 (설치와 구성)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도서 및 기타 교육 자료의 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정보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연구 및 기금 부학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의학정보실장, 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으로 한다.
3.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 (기능) 도서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된 사항을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1. 도서 구입 예산에 관한 사항
2. 구비 도서 및 학술지 선정
3. 기타 의학 교육 자료 구비에 관한 사항